

2025

국민건강보험공단, 국시원 국민건강보험법

엠북 공기업/공단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
- ★ 90분 완성
- ★ 최근 법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
도서명 : 국민건강보험법

ISBN : 979-11-94286-94-3

발간일 : 2025-03-25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1,000원



국민건강보험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가입자(p14)

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(p25)

제4장 보험급여(p45)

제5장 건강보험평가원(p83)

제6장 보험료(p91)

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(p128)

제8장 보칙(p131)

제9장 벌칙(p172~176)

[약어]

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

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(지방자치단체)

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

이사장은공단 이사장

평가원은 심사평가원(건강보험심사평가원)

원장은 심사평가원 원장

재산점수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

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남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용

붉은색은 시행예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4조

1. 목적

- 국민의 질병/부상에 대한 예방/진단/치료/재활과 출산/사망, 건강증진에 대해
- 보험급여를 실시해

-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

2. 관장

- 건강보험사업은 장관이 주관

3. 정의

가. 근로자

-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 대가로 보수
받아 생활
- 법인 이사, 임원 포함
- 공무원, 교직원 제외

나. 사용자

- 근로자 소속 사업장 사업주
- 공무원 소속 기관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교직원 소속 사립학교 설립/운영자

다. 사업장

- 사업소나 사무소

라. 공무원

- 국가등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

마. 교직원

-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경영기관 근무
교원/직원

4. 장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(이하 종합계획)의 수립 등

가)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

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심의 거쳐 5년마다 수립
- 수립된 계획 변경시도 같다

나) 종합계획 내용

- 보험정책 기본목표, 추진방향
- 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/방법
- 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, 운영
- 보험료 부과체계
- 요양급여비용

- 건강증진 사업
- 취약계층 지원
- 보험 통계, 정보 관리
- 보험 개선에 필요한 대통령령 사항

다)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
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심의 거쳐 수립/시행

라)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

마) 다음 경우 보고서 작성해 지체없이 국회
소관 상임위에 보고

- 종합계획 수립/변경
- 시행계획 수립

-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

바) 필요시 관계 기관 장에 자료 요구

-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

사) 이외 대통령령

5. **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**(이하 심의위)

가. 설치

- 다음 심의를 위해 장관 소속으로 둠

1) 종합계획/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의결은 제외)

- 2) 요양급여의 기준
- 3) 요양급여비용
- 4)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
- 5)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점수당 금액
- 6)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사항(의결은 제외)
 - **건강보험 가입자(이하 가입자) 소득 파악** 실태 조사, 연구
 - 가입자 소득 파악,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방안
 - 심의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7) 건강보험에 관한 대통령령상 주요 사항

나. 구성

1) 위원장/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5명

- 위원장은 보건부차관

2) 위원은 다음 중 장관이 임명/위촉

a)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추천 각 2명

b) 시민(비영리민간), 소비자, 농어업인,
자영업자 단체 추천 각 1명

c) 의료계, 약업계 대표 단체 추천 8명

d) 다음 8명

- 대통령령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명
- 이사장/원장 추천 각 1명
- 건강보험 학식/경험 풍부한 4명
- 상기 위원 중 위원장이 부위원장 지명

e) 위원(단, 공무원 제외) 임기

- 3년
-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시 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

다. 기타

- 장관은 국회에 심의위가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심의한 사항 보고 요
- 운영 등은 대통령령

제2장 가입자

5~12조

1. 적용 대상 등

가. 국내 거주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됨

나. 다음은 제외

- 1) 의료급여 수급권자(이하 수급권자)
- 2) **유공자등**(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등)

의료보호대상자(이하 **유공대상자**)

- 단, 다음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됨

a) 유공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
신청

b) 건강보험 적용받던 자가 유공대상자로
되었으나 보험자에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
안함

다. 피부양자

1) 다음 중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
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부령 기준 이하인 자

- 직장가입자의

· 배우자

·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
·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과 그